

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00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 출 일 : 2018년 10월 17일
- 회 부 일 : 2018년 10월 29일

2. 제안이유

-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음에도 우리 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므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전국 체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추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중에 서울특별시세 등을 10년간 체납사실 없이 납부하고, 최근 8년간 계속하여 연 2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도록 개정함.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 완료

다. 입법예고(2018. 8. 2. ~ 8. 22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의 체납 없이 매년 2건 이상¹⁾ 8년간 납기 내 납부한 자를 규정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²⁾에 따라 다른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의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(안 제2조제1호)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1. 모범납세자 : <u>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(이하 “지방세”라 한다)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)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</u></p>	<p>1. 모범납세자: <u>선발기준일 현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</u></p> <p>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<u>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(이하 “서울특별시세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.</u></p> <p>나. <u>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(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)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.</u></p>

- 1) 취득세,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, 재산분에 한함(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제외). 연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세목(재산세, 자동차세)은 1건으로 봄(예시: 재산세 주택분을 7월(1/2)과 9월(1/2)에 납부하더라도 1건임).
- 2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3. “지방세”란 특별시세, 광역시세, 특별자치시세, 도세,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·군세, 구세(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

- 서울시는 본 조례를 근거로 모범·전자·유공 납세자³⁾를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왔으며,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증명서 발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 및 시금고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, 수수료 면제,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2018년에는 22만 3,021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음.

〈 최근 5년간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발 현황 〉

(단위 : 명)

납세자	'18년	'17년	'16년	'15년	'14년
모 범	223,021	293,552	281,032	271,858	261,230
유 공	191	196	185	180	97

※ '18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*으로 전년대비 선발인원 축소

*변경前: 최근3년 체납 없이,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납부

- 서울시 체납은 없으나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이 있는 시민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될 우려가 있고, 매년 행정안전부는 규정 미비를 이유로 체납조회에 비협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모범납세자 선발시 체납 조회 기준 지방세를 '최근 10년간 시세 및 구세'에서 "선발기준일 현재 전국 지방세"까지 확대 시행하는 근거 규정(안 제2조제1호)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)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선발)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.

1. 모범납세자 :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(이하 "지방세"라 한다)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)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
2. 전자납세자 :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
3. 유공납세자 :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

-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서울시 체납이 없는 경우 선정되는 것은 당연하나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선정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.

- 다만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도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 통념상 부적합을 이유로 선정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면, 2007년 동 조례의 제정 당시 ‘납세의무자 자진납세의식 고취’를 향상 시키기 위한 본 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모범납세자 요건에 ‘국세의 체납도 없는 자’까지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- 그 밖에 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의 개정 사항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임.
 - ※ 안 제1조 : “구세” → “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”
 “고취시켜” → “고무하여”
 “기여함” → “이바지함”
 - ※ 안 제2조 : “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 제12조”
 → “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7조”
 “지방세를” → “서울특별시세 등을”
 “유공납세자 :” → “유공납세자:”
 - ※ 안 제3조 : “범위 내” → “범위”
 - ※ 안 제4조 : “제2항과” → “제2항 및”
 “국세·타” → “국세 및 다른”
 - ※ 안 제5조 : “시장” → “서울특별시장”

전문위원	김 태 한	입법조사관	최 석 훈
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